



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우원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05. 3. 25
발의자 :

제안이유

금년부터 경유승용차 시판이 허용됨에 따라 휘발유 대비 경유·LPG의 상대가격비를 환경 오염, 연비, 차량가격 등을 고려하여 2005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100:85:50으로 조정함으로써 휘발유 및 LPG 차량이 경유승용차로 급격히 전환되는 것을 완화하여 대기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

주요내용

수송용연료인 휘발유·경유·LPG의 상대 가격비가 2006년 7월 기준으로 100:75:60으로 되어 있으나, 이를 2007년 7월 기준으로 100:85:50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경유의 특별 소비세액을 리터당 460원에서 584원으로 인상하고, 부탄의 특별소비세액을 킬로그램당 704원에서 414원으로 인하 조정함(안 제1조제

2항제4호나목 및 바목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같이 국회에 제출되는 교통세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特別消費稅法一部改正法律案

特別消費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제2항제4호나목중 “리터당 460원”을 “리터당 584원”으로 하고, 동호바목중 “킬로그램당 704원”을 “킬로그램당 414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일반적 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③(경유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적용의 특례) 제1조제2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

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.

과세대상	단위	적용기간 및 세율	
		2005. 7. 1 ~2006. 6. 30	2006. 7. 1 ~2007. 6. 30
제1조제2항제4호 나목 해당물품	리터당	458원	521원

- ④(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 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第1條(課稅對象과 稅率) ① (생 략)</p> <p>②特別消費稅를 賦課할 物品(이하 “課稅物品”이라 한다)과 그 稅率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~3 (생 략)</p> <p>4. 다음 각목의 物品에 대하여는 그 數量에 당해 각목의 稅率을 적용한다.</p> <p> 가. (생 략)</p> <p> 나. 輕油 및 이와 유사한 代替油類에 대하여는 <u>리터당 460원</u></p> <p> 다.~마. (생 략)</p> <p> 바. 石油ガス증 부탄(부탄과 프로판을 混合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<u>킬로그램당 704원</u></p>	<p>第1條(課稅對象과 稅率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.</p> <p>1.~3 (현행과 같음)</p> <p>4.-----.</p> <p> 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 나. -----.</p> <p> 리터당 584원</p> <p> 다.~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 바.-----.</p> <p> 킬로그램당 414원</p>